

광주지방법원 2024. 11. 28 선고 2023가단507058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고A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백 담당변호사 정주혜, 박현웅

피고1. B

2. C

3. D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관재, 박기범

변론 종결2024. 9. 26.

판결 선고2024. 11. 28.

주 문

1. 이 사건 소 중 주위적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예비적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주위적으로, 피고들과 E가 2018. 7. 19. 체결한 각 채무변제계약을 취소한다. 원고에게, 피고 B은 10,480,478원, 피고 C은 12,193,250원, 피고 D는 8,767,707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예비적으로, 원고에게, 피고 B은 10,480,478원, 피고 C은 12,193,250원, 피고 D는 8,767,707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23. 8. 8.부터 이 사건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사해행위 취소의 소에 대해 피고들은 제척기간이 도과되었다고 다투고 있으므로 이에 대해 살펴본다.

나. 채권자취소권의 행사에서 그 제척기간의 기산점인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은 채권자가 채권자취소권의 요건을 안 날, 즉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사해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된 날을 말한다. 이때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알았다고 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채무자가 재산의 처분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며, 구체적인 사해행위의 존재를 알고 나아가 채무자에게 사해의 의사가 있었다는 사실까지 알 것을 요한다. 사해행위의 객관적 사실을 알았다고 하여 취소원인을 알았다고 추정할 수는 없고, 그 제척기간의 도과에 관한 증명책임은 사해행위취소소송의 상대방에게 있다. 그리고 사해행위가 있는 후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알면서 피보전채권을 양도하고 양수인이 그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하는 경우에는, 채권의 양도인이 취소원인을 안 날을 기준으로 제척기간 도과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8. 4. 10. 선고 2016다272311 판결 등 참조).

다. 살피건대, 갑 제2, 3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 즉 ① 원고는 2022. 9. 29.경 주식회사 F으로부터 주식회사 G 및 E에 대한 대출금, 신용카드 대금 등 채권을 양수받은 점, ② 주식회사 F은 2018. 10. 31. 위 E가 H에게 자신의 유일한 재산이 부동산을 매도하였다는 이유로 사해행위취소 소송을 제기한 적이 있는 점, ③ 원고가 주장하는 사해행위는 E와 피고들 사이에 2018. 7. 19. 체결된 채무변제계약으로, 이는 광주지방법원 1

부동산강제경매 사건에서 2020. 12. 17. 실시된 배당절차에서 위 계약사실을 알게 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적어도 양도인인 주식회사 F은 2020. 12. 17. 구체적인 사해행위의 존재와 사해의사를 알게 되었다고 봄이 타당하고, 그로부터 1년이 경과된 2023. 2. 14. 이 사건 소가 제기된 사실은 기록상 분명하다.

라. 따라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사해행위 취소의 소는 제척기간의 도과로 부적법하다.

2. 예비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들이 E와 2018. 7. 19. 체결한 채무변제약정은 허위로 임금 및 퇴직금이 존재하는 것으로 통정하여 작성된 것으로 무효이다. 따라서 위 채무변제약정을 원인으로 한 지급명령을 통해 광주지방법원 I 부동산강제경매 절차에서 피고들에게 배당된 금액은 부당이득에 해당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갑 제5, 6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들은 주식회사 G와 E를 상대로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광주지방법원 2020차전110431호, 같은 법원 2020차전110428호, 같은 법원 2020차전110430호로 지급명령을 발령받아 그대로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이고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지급명령의 원인인 채무변제약정이 통정 허위표시에 해당한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예비적 청구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 중 주위적 청구 부분은 부적법하여 각하하고, 예비적 청구 부분은 이유 없으므로 이를 각 기각한다.

판사윤봉학